

[붙임] 원광보건대학교 규정 개정 승인문

1. 취창업지원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개정내용

- 규정 명칭인 “취창업지원위원회규정”을 “진로취업지원위원회규정”으로 한다.
 - 제1조(목적)의 “취창업지원위원회”를 “진로취업지원위원회”로 한다.
 - 제4조(기능)의 “1. 취창업”을 “1. 진로취업”으로 하며, “2. 취창업”을 “2. 진로 및 취업”으로 하고, “3. 취창업”을 “3. 진로 및 취업”으로 하며, “4. 취창업”을 “4. 진로취업”으로 하고, “5. 재학생 및 졸업생”을 “5. 진로지도를 기반으로 재학생 및 졸업생”으로 하며, “6. (중략)취창업”을 “6. (중략)진로취업”으로 한다.
 -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.
- “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u>취창업지원위원회규정</u>	<u>진로취업지원위원회규정</u>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원광보건대학교 취창업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진로취업지원위원회</u> ----- -----
제4조(기능) (생략) 1. <u>취창업</u> 지원계획의 수립, 운영, 평가에 관한 사항 2. <u>취창업</u> 정규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 3. <u>취창업</u> 비정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. <u>취창업</u> 관련 교육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. <u>재학생 및 졸업생</u> 의 취업을 향상과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6. 기타 각호와 관련되거나, <u>취·창업</u> 관련 지원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	제4조(기능) (현행과 같음) 1. <u>진로취업</u> ----- 2. <u>진로 및 취업</u> ----- 3. <u>진로 및 취업</u> ----- 4. <u>진로취업</u> ----- 5. <u>진로지도를 기반으로 재학생 및 졸업생</u> ----- ----- 6. ----- <u>진로취업</u> ----- -----
	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교내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개정내용

- 제3조(수혜대상자 및 지급액) 제1호 중 “바.(중략)학생복지처”를 “바.(중략)학생복지팀”으로 하고, 같은조 “8.(중략)학생복지처장의 승인”을 “8.(중략)학생성공지원처장의 추천”으로 하며, 같은조 “27.(중략) 가.(중략) 60%(중략) 나.(중략) 60%”를 “27.(중략) 가.(중략) 40%(중략) 나.(중략) 40%”로 하고, 같은조 “33.(중략) 자녀”를 “33.(중략) 운영자 및 종사자”로 한다.

-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 27호(전공심화장학금)규정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”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3조(수혜대상자 및 지급액) 1. 신입생장학금 가. ~ 마. (생략) 바. Happy장학금 - 입학생 중 차상위 계층으로 <u>학생복지처</u> 에 구비서류를 제출 한 자에게 당해학기에 일정금액을 지급한다. 2. ~ 7. (생략) 8. STAR장학금 - 교육이념과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중 <u>학생복지처장의 승인</u> 을 받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인원과 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하며,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.0 이상이어야 한다	제3조(수혜대상자 및 지급액) 1. 신입생장학금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바. Happy장학금 - 학생복지처 2. ~ 7. (현행과 같음) 8. STAR장학금 - <u>학생성공지원처장의 추천</u>
9. ~ 26. (생략) 27. 전공심화 장학금 - (생략) 가. 본교졸업생은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의 <u>60%</u> 를 지급한다. 나. 타대학졸업생은 수업료의 <u>60%</u> 를 지급한다. 다. (생략) 28. ~ 32. (생략) 33. 농촌사랑장학금 - 졸업예정자 중 졸업학기에 농업, 축산업, 어업인 <u>자녀</u> 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비서류를 제출한 경우,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.0이상 이여야 하고, 선발기준과 장학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	9. ~ 26. (현행과 같음) 27. 전공심화 장학금 - (현행과 같음) 가. 60% <u>40%</u> 나. 60% <u>40%</u> 다. (현행과 같음) 28. ~ 32. (현행과 같음) 33. 농촌사랑장학금 - <u>운영자 및 종사자</u>
	부 칙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 27호 (전공심화장학금) 규정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3. 교외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개정내용

- 제6조(장학생 운영 심의기구 구성·운영) 제2항의 “(중략)학생복지처 팀장”을 “(중략)학생복지팀 팀장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3항의 “(중략)학생복지처장”을 “(중략)학생성공지원처장”으로 한다.
-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6조(장학생 운영 심의기구 구성·운영) ① (생략)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생복지처 팀장을 포함한다. ③ 위원은 학생복지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	제6조(장학생 운영 심의기구 구성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학생복지팀 팀장 ----- ③ ----- 학생성공지원처장 -----
	부 칙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4. 재외국민 및 외국인학생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개정내용

- 제12조(교육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)을 삭제한다.
- 제13조(재외국민 및 외국인학생 운영에 대한 지원) “③ 재외국민 및 외국인학생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운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”를 신설한다.
-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(단, 2020학년도 2학기는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.)”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12조(교육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) (생략)	제12조(교육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) <조삭제>
제13조(재외국민 및 외국인학생 운영에 대한 지원) ① ~ ② (생략) ③ <항신설>	제13조(재외국민 및 외국인학생 운영에 대한 지원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재외국민 및 외국인학생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운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	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 (단, 2020학년도 2학기는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.)

5. 국제교류협력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가. 제정문

“ 국제교류협력운영위원회 규정

제정 2020.00.0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국제화 발전 계획에 따라 국제교류협력운영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, 원광보건대학교 국제교류협력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국제교류처장으로 하며,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회의 특수성에 따라 해외 전문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제3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
1.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
2. 외국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, 관리에 관한 사항
4. 다양한 국내·외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5.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해외 취·창업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다양한 국제화 사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7. 우리대학 고등교육시스템의 해외 진출 및 각종 ODA(공적개발원조) 사업에 관한 사항
8.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
9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5조(회의소집과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③ 위원회의 특수성에 따라 해외 전문인사는 화상회의로 참석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록 및 보고시행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.

제7조(간사와 서기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, 간사는 팀장으로 하고,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비밀엄수의 임무)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”

6. 교외학술연구비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개정내용

- 제2조(적용대상)의 “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원비는 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법인체로부터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교수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비를 적용대상으로 한다.”를 “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법인체로부터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,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(공동관리규정), 학술진흥법 시행령 등 연구비지원기관(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사업에 한정)의 관리지침이 있는 경우는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”로 한다.

- 제5조(지급)의 “① 연구원의 연구 활동비 및 연구 보조원의 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의 청구에 따라 은행계좌로 지급한다.”를 “①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인건비, 연구활동비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.”로 하며, 같은조 같은항 “1. 대상 범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받지 않는 순수 연구용역과제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지원기관이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2. 인건비 편성 및 집행 기준은 다음과 같다.”를 신설하고, 2. 인건비 편성 및 집행 기준은 표로 정하되, 해당 내용은 “비목 : 직접비, 세목 : 내부인건비, 외부인건비, 내용 : 1. 학소 소속 전임교원 인건비 편성 가능, 2. 개인별 참여율 100% 제한 예외, 3.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예외”로 하고, 같은조 “② (중략) 산학협력단 회계를 준용하여”를 “② (중략) 우리 대학 여비규정을 적용하여”로 한다.

-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원비는 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법인체로부터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교수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비를 적용대상으로 한다.	제2조(적용대상) <u>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법인체로부터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비를 적용대상으로 하며,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(공동관리규정), 학술진흥법 시행령 등 연구비지원기관(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사업에 한정)의 관리지침이 있는 경우는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</u>
제5조(지급) ① 연구원의 연구 활동비 및 연구 보조원의 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의 청구에 따라 은행계좌로 지급한다. <u><호신설></u>	제5조(지급) ① <u>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인건비, 연구활동비는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.</u> <u>1. 대상 범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받지 않는 순수 연구용역과제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지원기관이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u>

현	개 정								
<호신설> ② 국내 및 국외 여비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준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③ (생략)	2. 인건비 편성 및 집행 기준은 다음과 같다. <table><tr><th>비목</th><th>세목</th><th>내용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직접비</td><td>내부인건비</td><td>1. 학교 소속 전임교원 인건비 편성 가능 2. 개인별 참여율 100% 제한 예외</td></tr><tr><td>외부인건비</td><td>3.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예외</td></tr></table> ② ----- 우리대학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----- ③ (현행과 같음)	비목	세목	내용	직접비	내부인건비	1. 학교 소속 전임교원 인건비 편성 가능 2. 개인별 참여율 100% 제한 예외	외부인건비	3.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예외
비목	세목	내용							
직접비	내부인건비	1. 학교 소속 전임교원 인건비 편성 가능 2. 개인별 참여율 100% 제한 예외							
	외부인건비	3.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예외							
	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							

7. 창업교육센터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개정내용

- 규정 명칭인 “창업교육센터운영규정”을 “창의융합교육센터운영규정”으로 한다.
- 제1조(목적)의 “(중략)창업”을 “(중략)창의융합”으로 한다.
- 제2조(명칭 및 소재)의 “(중략)창업”을 “(중략)창의융합”으로 한다.
- 제6조(창업교육지원단)을 삭제한다.
-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u>창업교육센터운영규정</u>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창업에 대한 교육 및 기반을 조성하고 창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창업교육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명칭 및 소재) 명칭은 창업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하고 원광보건대학교 내에 둔다. 제3조(업무) ~ 제5조(운영위원회) (생략) 제6조(창업교육지원단) ① 센터 내에는 창업 실무교육 지원을 위하여 창업교육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 ② 지원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	<u>창의융합</u>----- 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창의융합</u> ----- 제2조(명칭 및 소재) --- <u>창의융합</u>----- 제3조(업무) ~ 제5조(운영위원회) (현행과 같음) 제6조(창업교육지원단) <u><조삭제></u>
	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8. 창업보육센터 규정을 폐지한다.

가. 폐지문

“창업보육센터 규정

내용생략

부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. ”

9. 도서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개정내용

－ 제3조(기구)의 “제3조(기구)”를 “제3조(기구 및 예산)”으로 하며, 같은조 “② 사서팀은 필요에 따라 행정조교를 둘 수 있다.”를 “② 도서관은 학생 수, 장서 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”로 하며, 같은조 “③ 사서팀은 필요에 따라 행정조교를 둘 수 있다.”를 신설한다.

－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3조(기구) ① (생략) ② 사서팀은 필요에 따라 행정조교를 둘 수 있다. ③ <항이동>	제3조(기구 및 예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도서관은 학생 수, 장서 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③ 사서팀은 필요에 따라 행정조교를 둘 수 있다.
	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끝.